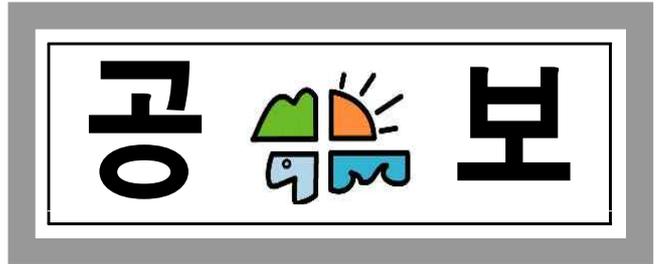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187호 2018년 12월 28일(금)

## 조 례

-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3
-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4
-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6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 12
-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17

## 규 칙

-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29
-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0
-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32
-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34
-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4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6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48호

##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 이유

관내 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 지역대학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행정경쟁력을 높이고자 설치된 관학협회의 구성 및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49호

##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속초시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구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정책연구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 이유

속초시가 수행한 각종 정책연구용역 등에 대하여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50호

##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속초시 의  
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제4조(「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인해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  
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 특별회계 조례 중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명시된 특별  
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존속기한 미연장으로 인한 특별회계 자동폐지를 방지하고자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51호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만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지급(단,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제4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제6조 중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	-
------------------	---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예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속초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 개정 이유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을 강원도 및 타 자치단체 지급일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52호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 이유

장사시설 공설봉안묘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제정된 기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여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53호

##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 제58조의2 규정”을 “법 제58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 이유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피해액도 증가하는 만큼 피해 보상액의 최대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농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54호

##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 중 “1,000㎡”를 각각 “1,0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상이거나”를 “이상 또는”으로, “이상인”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100세대이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지상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36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개정 이유

경관지구 외 일반건축물일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자원 훼손(차폐) 방지 및 개방적인 조망환경 조성이 어려우므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655호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풍물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라 함은 풍물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 공연을 연구·지도·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라 함은 단원의 일원으로서 공연활동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악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한다.

② 풍물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속초시박물관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단원의 자격과 채용)** ① 단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연령을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악, 사물놀이 등 풍물과 관련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 분야로 권위 있는 전국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자격으로 3위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단무장은 제외한다.

③ 악장은 단원 중에 국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단무장은 국악에 조예가 있으며, 공연기획과 마케팅 및 행정실무에 능한 사람을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수석단원은 단원 중에서 6년 이상 단원으로 복무하고 평정 등급이 ‘수’인 사람을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채용의 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단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품물단을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정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악장은 부단장을 보좌하며, 연주회의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품물단의 공연기획·마케팅과 행정실무 및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악기와 물품을 보관·관리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품물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립품물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물단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실비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일반 공개전형 시행 및 실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형대상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일반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상임단원의 위촉)** 비상임단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7일 이상 연속으로 결근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속초시립풍물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4. 풍물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임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단장의 허락 없이 자체공연 이외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7.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
  8. 그 밖의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예산)** 시장은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수 등)** ① 제3조에 따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및 체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 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 및 체수당”이란 매월 또는 반기, 연 1회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연가보상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등을 말하며 단원별 직렬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2. “예능수당”이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

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성과상여금”이라함은 실기 및 근무평정과 공연활동 성과 등을 심사하여 평정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급여지급일 현재 본봉의 60%를 지급기준일 전 10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② 매월 토요일과 공휴일을 비롯하여 평일에 개최되는 일일테마공연에 6일 이상 참가하는 비상임단원에게는 별표 5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제15조(협연)**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협연자를 초청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외부출연 및 협연수입금)** ① 풍물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와 강습료는 예외로 한다.

② 풍물단과 협연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협연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③ 협연수수료의 납부시기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관람료 등)** ① 풍물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또는 박물관내 일일공연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기준은 작품의 질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상임단원의 직렬 등급표

구 분	직 렬 등 급	초 임 호 봉
악 장	일반직 7급 공무원	3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무 장	일반직 8급 공무원	3호봉
단 원	일반직 9급 공무원	3호봉

[별표 2]

## 예 능 수 당

(단위 : 원)

구 분	예 능 수 당	비 고
약 장	200,000	
수석단원	100,000	
단 원	100,000	

[별표 3]

## 직 책 수 당

(단위 : 원)

구 분	직 책 수 당	비 고
약 장	100,000	
수석단원	50,000	
단 무 장	50,000	
단 원	50,000	

[별표 4]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17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 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 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기 타	지급하지 않음

비고

\*시장은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 비상임단원 수당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수 당	비 고
약 장	1,000,000	1개월
수석단원	800,000	”
단 무 장	600,000	”
단 원	600,000	”

[별표 6]

## 협 연 수 수 료

(단위 : 원)

창작공연물				협연수수료		비 고
공연명	공연내용	출연인원	공연시간	관내	관외	
질 주	대북, 모듬북, 개인놀이	7명~10명	25분 내외	1,000,000	2,000,000	
비선류	난타북	5명~10명	20분 내외	500,000	1,000,000	
상모판굿	사물, 상모, 소고, 12발상모, 버나	6명~10명	25분 내외	200,000	1,000,000	
사물놀이	쇠, 징, 장구, 북	4명~5명	20분 내외	100,000	500,000	
설장고	장구	4명~5명	20분 내외	100,000	500,000	

※ 공연별 협연수수료는 기준금액으로 이동시간, 장비, 인원, 공연내용 등을 고려하여 협연요청 기관·단체(개인)와 협의하여 협연수수료를 결정한다.

### ◇ 개정 이유

속초시립풍물단원의 정년을 관련 법률 및 속초시 공무원근로자와 걸맞게 변경하고, 상임단원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과 관내·외 및 공연종목별 협연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18호

##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 이유

관내 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 지역대학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행정경쟁력을 높이고자 설치된 관학협회의 구성 및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19호

##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 보상금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속초시 시정소식지 원고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 관련)

(단위 : 원)

기 고		시 · 만화 · 만평	비 고
매수	금액		
7매 이내	30,000	편당 50,000	
10매 이내	50,000		
10매 초과	70,000		

※ 매수는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한다.

### ◇ 제정 이유

시정소식지에 기고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20호

##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를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당직근무의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  
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별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 이유

당직(숙직 또는 일직) 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함으로서 평일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21호

##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하목 중 “실·”를 “담당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속초시직무대리규칙」”을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부시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본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부시장”을 “담당관은 부시장 이상, 과장은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을 “장은 제1항제2호와 동일하게 보며”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을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 대행점과 시금고

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으로 한다.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5호서식은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 세입 예산월별징수계획서

국 담당관·과

회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재원별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13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배정	
	집행	
	지출	

 계획서

국 담당관 · 과

회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14호서식]

세출예산 {

 배정(재배정)  
 지출한도액
 
 } 통지서  
 ( 회계)

제 호  
수 신

년 월 일  
 기획예산담당관  
 ○ ○ 담당관 · 과장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기 배 정 액 ②	금 회 배정액 ③	배정액 누 계 ②+③	배 정 잔 액 ①-②-③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 목	통계 목						

[별지 제15호서식]

## 예 산 원 부

연도      회계      국      담당관 ·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 천원)

월일	예산과목		적요	예산현액								배정액			잔액
	편성 목	통계 목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이월	예산 전용	예비비 사 용	예산· 이용· 이체	수입 대체 경비	합계	배정	재배 정	본청 집행	

(백상지 70g/㎡) 500mm × 250mm

[별지 제16호서식]

### 세출 예산 정리부

연도      회계      국      담당관·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 원)

통계 목	일자	원인 번호	적요	채주	예산 현액 ①	예 산 배 정 액 ②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일상경 비	일상 경비외	계 ③	예산 현액대 ① - ③	예산 배정대 ② - ③
			월 계 누								
			월 계 누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 원)

구 분 조 직	예 산 과 목					공 사 기 간	예 산 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 장 물 이 전 비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 문 목	통계 문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 월 현 공	말 재 정	완 예 정	공 일	이월사유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별지 제19호서식]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통지)서

국 담당관·과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후 소요액	요구액		사유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	통계 목					증	감	

년 월 일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귀하

<기재요령>

-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2) 사유란에는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 원)



##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상 호		③성 명
④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납품 년월일	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등록 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 등록 <input type="checkbox"/> , 미등록 <input type="checkbox"/>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물 품 출납원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담당관·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담당관·과	직급    성명            (인)
			분임물품 출납원

〈기재요령〉 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91호서식]

##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명 인

과 직 성명 인

속초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94호서식]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출) 국 담당관·과



년

년 월분

지출계산서

증빙서 책

지수 장

청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년 월 일 제출

(내 용)

예산과목					예산 배정액		자금 배정액		지출액					잔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	통계 목	본기 분	본기 까지 의누 계(A)	본기 분	본기 까지 의누 계(B)	본기 분	본기 까지 의누 계	본기 반납 액	본기 과목 경정 액	차감 누계 액 (C)	예산 배정 대(A) -(C)	자금 배정 대(B) -(C)	

<기재요령>

- 1) 사업란에는 조직부터 세부사업란에는 명칭을, 편성·통계목에는 부호와 명칭을 기입
-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 3) (본기과목경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 「주서」

[별지 제98호서식]

지급실적보고서

(정책사업)

담당관·과



[별지 제101호서식]

## 지 출 부 (지출원용)

연도      회계      국      담당관·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 원)

통계 목	일자	명령 번호	적요	채권 자	예산 현액 ①	예산배 정액 ②	자금배 정액 ③	지출액			잔 액	
								일 상 경 비	일 상 경 비 외	계 ④	예산현액 대 (①-④)	자금배 정대 (③-④)
			월 계 누 계									
			월 계 누 계									



[별지 제104호 서식]

### 지급내역부 (일상경비출납원용)

연도      회계      국      담당관·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 원)

통계 목	일자	명령 번호	적요	채권 자	결정 예산액 ①	지급원인 행위액 ②	배부예산 잔액 (①-②)	일상경비 수령액 ③	지급 액 ④	자금잔 액 (③-④)

〈기재요령〉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 개정 이유

2019. 1. 1. 부로 속초시 행정조직의 국(局)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행정안전부 훈령)(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회계관리에 필요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의 예산집행품의 등의 위임전결 금액 기준을 개정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22호

##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위생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피해금액 산정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다.
- ② 조사결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조사서에 작성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청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받은 신청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 개정 이유

시행규칙의 제명을 조례의 제명과 일치 시키고 관련 법령 및 실제 업무와 불일치하는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상위법령 서식을 준용하고자 함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23호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를 “규칙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로 한다.

제2조 중 “시립풍물단”을 “속초시립풍물단”으로, ““박물관””을 ““박물관””으  
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면접”을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를 “이미”로, “70%”를 “70퍼센트”로 한다.

제10조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 이유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명 및  
조례 인용규정을 변경하고자 함